

#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48
----------	-----

제출연월일 : 2008. 6. 23.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체육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간중심의 체육진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2009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 대전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위원수를 확대하고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8. 4. 18. ~ 5. 7.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협의회”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업무관련국장,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 된다.

③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3. 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제5조의 제목 “(의장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

지원과장이 된다.

제명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 제2항-----<u>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u>----- -----</p>
<p><b>제2조(기능)</b> <u>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2. (생략)</p> <p>&lt;신설&gt; &lt;신설&gt;</p> <p>3. (생략)</p>	<p><b>제2조(기능)</b> <u>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u></p> <p>4. <u>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u></p> <p>5. (현행과 같음)</p>
<p><b>제3조(구성)</b> ①<u>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u>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u></p> <p>③<u>위원은 시생활체육협의회장, 대학의 체육 담당교수, 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과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u></p>	<p><b>제3조(구성)</b> ①<u>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②<u>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업무 관련국장,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 된다.</u></p> <p>③<u>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u></p> <p>1. <u>대전광역시의회의원</u></p> <p>2. <u>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u></p> <p>3. <u>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u></p> <p>4. <u>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u></p>

현행	개정안
<p>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 ② (생략)</p> <p>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지원과장이 된다.</p> <p>③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과장이 된다.</p>

##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위원은 시생활체육협의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과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③<삭제 1996. 08. 22 조례 제2590호>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실무위원회)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